

‘25년 공익직불제 직불이행점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에서 근무할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의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 1.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장

1. 채용내용

업무명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예정지	모집인원 (명)
농림사업 이행점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상담·안내 -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사전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업무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군산시 (농관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	7명

2. 채용요건

- 채용계약일 기준 만 18세 이상 자
- 채용계약일을 기준으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책임감이 투철하고 채용기간 중 성실하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당해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채용기관 관내거주자. 다만, 직무 수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채용 가능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퇴직일 또는 형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채용할 수 없음

< 우대조건 > 심사 시 가점 부여

- 농업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종사경력자
- 농업 관련 고등학교·대학(전공) 졸업(예정자)
- 직무(전산, 농림축산식품분야) 자격증 보유자
- 운전면허증 소유자, 최근5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없는 자
- 취약계층(장애인 및 저소득층)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보육 가구
 -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 (다자녀보육가구) 만 20세미만의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는 가구
 - ***** (보호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

♣ 가산점 부여기준 ♣

항목	구분	내용	적용대상	가산점
법정 가점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자	서류심사 면접심사	만점의 1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3호, 제5호에 해당자	서류심사 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사회 형평 가점	장 애 인	1)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서류심사 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저소득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 세대주	서류심사 면접심사	만점의 5퍼센트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해당자	서류심사 면접심사	만점의 3퍼센트
	다자녀 보육가구	주민등록상 만 20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보육하고 있는 자	면접심사	만점의 3퍼센트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
-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

3. 근무조건 등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계약기간
 - 2025. 2. 3. ~ 2025. 10. 21.
 - * 계약 게시일은 채용일정 등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보수: 일급 80,240원
 - 현지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비 지급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후생복지: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장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군산시 조촌동 소재)

4. 심사방법 및 일정

- 가. 1차 심사: 서류심사 (2025. 1. 20.(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5. 1. 21.(화) 예정
 - 개별통보, 우리 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면접일정 등을 게재함
- 나. 2차 심사: 면접심사 (2025. 1. 23.(목)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검증
- 다. 최종합격자: 2025. 1. 24.(금), 개별 통보

5. 공고 및 원서접수

- 가. 공고기간: 2025. 1. 10.(금) ~ 2025. 1. 17.(금)
- 나. 접수기간: 2025. 1. 10.(금) ~ 2025. 1. 17.(금) 18:00까지
 - * 토,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다.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 라. 접수장소
 - 우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우: 54076, 군산시 조촌5길 59)
 -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 1층 사무실(063-440-7319)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다.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해당할 경우) 친·인척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라. 자기소개서 1부 마. 주민등록초본 1부(가족 등 동거인을 제외한 응시자만 기재)	※ 주민등록표는 '25.1.10. 이후 발급분 제출
심사 우대 관련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가. 졸업(예정)증명서 1부 나. 전산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다.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기재 필수 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다자녀 보육가구인 경우) 마.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가점을 받은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아.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및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운전경력 조회기간 최근 5년	※ 수급자 증명서 및 결정통지서도 함께 제출

※ 제출 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7.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지원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 응시인원과 관계없이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 (☎ 063-440-7319)

[붙임 2]

지 원 신 청 서

응시분야/지역 : 직불이행점검 기간제조사원	※ 접수번호 :
-------------------------	----------

인 적 사 항	성명	한 글		생년월일		성별	
		한 자					
	주 소	(우: -)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경력 사항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 격 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우대 사항	우대사항 (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우대사항(관련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p>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5년 1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작성자 : (서명)</p>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1. 지원신청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자필 또는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
2. 지원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신청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지원신청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성요령》

- ① 응시분야, 지역: 공고문의 “1. 채용내용”의 ‘채용분야’에 있는 00분야 및 근무 예정지역 기재
예시> 응시분야, 지역 :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조사원, 00시
- ② 주 소: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 ③ 경 력: 행정기관, 민간회사 등 근무경력을 기재
※ 기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 ④ 자격: 해당 자격증명을 기재
- ⑤ 우대사항: 농업관련 학력 등 우대 관련 사항 기재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2025. 1. .

작성자 ○ ○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2장 이내로 기술하되, 출신지역,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관련분야 활동·업적 등이 있으면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장 귀하

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지원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4대 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e-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 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일

지원자:

(인, 서명)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장 귀하

본인은 귀 기관에 채용지원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공받는 기관 및 목적

- 고용지원센터(워크넷): 중복 취업여부 확인 등
-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등: 4대 보험(건강,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가입
- 농협 등 금융기관: 임금 등의 지급·적립
- 경찰서 및 지자체: 신원조사, 신원조회 등

□ 제공의 법적근거

- 근로기준법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등

□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미 채용 시 파기)
- 퇴사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채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1월 일

지원자:

(인, 서명)

[붙임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1, 2, 41, 42, 43(모두 총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붙임 4]

친·인척 재직 여부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작성용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2018. 11.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2019. 12. 13.)』을 시달하여 채용비리가 방지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채용에 지원 시 지원자의 친·인척이 우리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친·인척의 재직 여부 -----

※ 친·인척과의 관계(있음 체크한 경우) : 촌

* 친·인척 인적사항(있을 경우 작성)

가. 성 명 :
 나. 생년월일 :
 다. 근무부서 :
 라. 직 위 :

※ 근로자는 해당되는 친·인척에게 별첨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를 징구하여 본 서류와 함께 제출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본인은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시 채용기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되며,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또는 당연면직·해고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해당 정보는 면접위원 제척·기피, 채용비리 방지·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뿐 심사 자료로는 쓰이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별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친·인척용)

본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채용기관'이라 함)의 채용 모집에 지원한 000의 친·인척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기관이 수집 및 이용,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친·인척 본인

- 성 명 _____ (서명) _____
- 생년월일 _____
- 직장전화 _____
- 부 서 _____
- 직 위 _____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채용기관) : 채용 심사위원 등의 제척·기피제 운영, 채용비리 여부 조사
* 동의한 개인정보를 통하여 채용기관, 제3자 등이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음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필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직장전화, 부서, 직위---동의 비동의
 - 상기 동의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동의 비동의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불합격자의 친·인척) '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파기할 때까지 보관
 - (합격자의 친·인척) 노무관리자료로 보존(해당 근로자의 재직기간)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인척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응시 원서 접수 제한 및 계약 거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임 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군산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